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2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한지아 · 서일준 · 배준영
박정하 · 고동진 · 이상휘
안상훈 · 박성훈 · 우재준
김재섭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필

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 급여(이하 “공공정책수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
3.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4.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정책수는 지불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 지급
2.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 지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5(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 급여(이하 “공공정책수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u> <u>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u> <u>2.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u> <u>3.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u> <u>4.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공공정책수는 지불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u>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u>

	<u>2.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 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 감지급 및 그 밖에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 지급</u>
--	---